

제 36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 21 조에 의거 제 36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 년 09 월 29 일(화) 오전 09 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375, 남산예술원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 제 1 호 의안 : 제 36 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3 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 4 호 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고, 금융 위원회 및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나.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위임인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3 개월이내), 대리인신분증

6. 기타사항

당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 참석주주님들을 위한 주주총회 기념품을 제작하지 않았으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주주총회 장소는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09 월 14 일

주 식 회 사 판 타 지 오
대표이사 신 영 진 (직인생략)

별첨1. 정관 개정(일부) 신규대조표(안)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제14조의2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설>	제14조의2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u>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u> 4. 상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u>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개정 상법 반영
제 24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신설>	제 24 조 (소집지 및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u>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u>	조문 추가
제 30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위임장)</u> 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전자위임장)</u> 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 수정
제 33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에서 8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3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u>3명 이상에서 5명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u> 으로 한다.	개정 상법 반영
제 37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신설>	제 37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u>및 주주</u>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⑤ <u>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u>	개정 상법 반영

별첨1. 정관 개정(일부) 신규대조표(안)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제 38 조 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 (상여금 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8 조 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 (상여금 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 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상법 반영
제 51 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u>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 까지</u> 로 한다.	제 51 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u>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u> 로 한다.	결산기 변경
제 56 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u>12월 31일</u> 24시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제 56 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u>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u> 24시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조문 수정
<u>부 칙</u> <u><신설></u>	<u>부 칙</u> <u>이 정관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4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부칙 신설